

#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띄어쓰기 오류 및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종합평가를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규정한 평가방식에 따르도록 수정(안 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7조)
- 나. ‘지방계약직공무원’은 ‘지방임기제공무원’으로,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관련 조항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관련 조항으로 수정(안 제6조, 제13조, 제15조)
- 다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관장 계약해지 관련 조항은 삭제(안 제6조)
- 라. 띄어쓰기,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(안 제6조, 제1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(강화) 규제 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사항 없음
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해당사항 없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갈등사항 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16. 9.22. ~ 10.12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 등 자료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조직담당관 조직관리팀 장영상 (☎ 2133-6736)

##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방계약직공무원”을 “지방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6조제1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”로, “범위안에서 2년이상”을 “범위에서 2년 이상”로 “있다.다만”을 “있다. 다만”으로 하며, 제3항제5호 중 “연장 또는 해지”를 “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9조제1항제3호”를 “제10조”로 하고, “연장·해지”를 “연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, 책임운영기관”을 “책임운영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평가결과의 반영·공표)”를 “(책임운영기관의 평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「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실시한다.  
제10조제2항(중전의 제1항) 중 “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운영의”를 “책임운영기관 운영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계약직공무원”을 “지방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”를 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”로 하고, “지방계약직공무원”을 “지방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”를 “제10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장제1항 중 “4급이하”를 “4급 이하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관장의 채용 등) ① 기관장은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·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<u>지방계약직공무원</u>으로 채용한다.</p> <p>②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<u>2년이상</u>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지방직영기업의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다.</p> <p>③ 시장이 기관장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채용계약의 <u>연장 또는 해지</u>에 관한 사항</p> <p>6.·7.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기관장 채용계약의 <u>연장·해지</u>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7조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2.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최하위등급인 경우</p> <p>제9조(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<u>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,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관련제도의 개선</u>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</p>	<p>제6조(기관장의 채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지방임기제공무원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<u>2년 이상</u>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연장</u>----- -----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제10조</u>----- ----- <u>연장</u>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9조(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<u>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관련제도의 개선</u>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4. ~ 6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평가결과의 반영·공표) &lt;신설&gt;</p> <p>① 기관장은 <u>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<u>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표</u>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임용권의 위임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15조(근무실적 평가) ① (생략) ② 기관장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8조에 따라 <u>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17조(성과상여금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관장은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<u>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</u>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공무국외여행) ① 기관장은 <u>4급이하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10조(책임운영기관의 평가) ①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「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실시한다.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-----.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지방임기제공무원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근무실적 평가) ①(현행과 같음) ② 기관장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5에 따라 <u>지방임기제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제17조(성과상여금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제10조에 따른 ----- -----.</p> <p>제19조(공무국외여행) ① 기관장은 <u>4급이하</u>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<u>필요한</u>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서울시 재정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장영상(2133-6736)